

# 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# 제목 연세로 명물거리 2차 간판개선사업 선금 지급 승인

연세로 명물거리 2차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·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제3호, 2015.1.5.)』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 사 명 : 연세로 명물거리 2차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·설치

나. 계 약 금 액 : 금339,000,000원(금삼억삼천구백만원)

다. 계약상대자: ㈜칼라아트, 흥미광고

라. 선금신청액 : 금101,000,000원(금일억일천만원)

마. 선금승인액 : 금101,000,000원(금일억일천만원)

- 계약금액의 30% (선금의무지급률 40%중 30%)

사. 준공 기한 : 2015.10.31.

## ※ 선금 지급시 유의사항

#### 가. 선금의 사용

O 수령한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(또한,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)

O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
# 나. 사용내역서 제출

O 지급한 선금의 전액 사용후 사용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. (단,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로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)

## 다. 반환청구

- O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함
  -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
  -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
  -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

## 라. 채권확보

-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서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은행의 선급금 지급보증서(선금지급일 이전~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)
  - 각 공제조합에 의하여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
- 마. 선금지급시 징구서류 : 문서 청구
  - O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
  - O 세금계산서
  - O 선금지급보증서. 끝.

주무관	송유정	광고물관리팀장	권세춘	건설관리과장	황도현	안전건설교통국장 <sup>06</sup> /	<sup>/</sup> 10 황도현
협조자							
시행 건설된	관리과-11132	(		) 접수		(	)
우 120-703 / 전화 1973	_	배문구 연희로 24 1송 02-330-164		/ http://	www.sdm.gc	.kr / 대시민공개	